

당당한꼬마김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60108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6-01-20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6-01-20

[당당한꼬마김밥]

정 보 공 개 서

[당당한꼬마김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6. . .

[당당한꼬마김밥]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1층 110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대 표 전 화	031-203-7070	대표 FAX	-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anes252@naver.com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 등 일반정보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사용할 [당당한꼬마김밥] 등에 대한 정보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6.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당당한꼬마김밥]의 가맹사업의 시작일
2. [당당한꼬마김밥]의 가맹사업의 연혁
3. [당당한꼬마김밥]의 업종
4. [당당한꼬마김밥]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5. [당당한꼬마김밥]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당당한꼬마김밥]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9. [당당한꼬마김밥]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일반 정보
10. [당당한꼬마김밥]에 지출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비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2.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사항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서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시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별첨1] 표준재무제표증명

[별첨2]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4] 매뉴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당당한꼬마김밥	당당한꼬마김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1층 110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 03. 05.	조경숙	031-203-7070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453-11-0166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당당한꼬마김밥을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당당한꼬마김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당당한꼬마김밥	-
상 호	당당한꼬마김밥 OO점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당당한꼬마김밥	출원일자 2025.05.16 출원번호 40-2025-0083653
광 고	-	-
그 밖의 당당한꼬마김밥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91,814	88,219	3,595	311,725	18,335	20,550
2023년	86,852	78,040	8,812	331,731	19,331	20,860
2024년	65,783	64,341	1,442	282,699	15,565	16,630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경숙	대표	2021. 03. ~ 현재	대표	경영 총괄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이미지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등록일자 등록번호		
당당한꼬마김밥 (상표권)		상표 (35류)	(2025.05.16.) 40-2025-0083653	조경숙	-
(상표권)					

- ①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 현재 출원 상태이므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③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사업 현황

1. [당당한꼬마김밥]을 시작한 날: 당사는 현재 [당당한꼬마김밥]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없습니다.
(직영점 시작한 날: 2021.03.05.)

2. [당당한꼬마김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당당한 꼬마김밥	당당한 꼬마김밥	조경숙	가맹사업 준비 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1층 110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 [당당한꼬마김밥]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당당한꼬마김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김밥, 쫄면, 라면, 떡볶이, 우동, 만두국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당한꼬마김밥]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2	-	2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1	-	1	2	-	2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 수

당당한꼬마김밥

[당당한꼬마김밥]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당당한꼬마김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당당한꼬마김밥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당한꼬마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당당한꼬마김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광고상현금융센터 지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	031-212-643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또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계약 체결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당한꼬마김밥]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나 예치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는 예치해야할 가맹금액을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등의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① 귀하가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교육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브랜드 재산권 -가맹점운영권의 사용 허락 -가맹점 운영정보 제공 및 개점 지원 -개점 전 조리, 서비스, 운영 교육
최초 가맹비	4,400				
최초 교육비	5,500				

귀하가 [당당한꼬마김밥] 운영권을 기존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양수 받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의 가맹비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수 전 반드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대가로 금5,500,000원(금오백오십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9,900]
최초가맹비(가입비)	4,400
최초 교육비	5,500
-	-

귀하가 당사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상의 대금 지급방법(예치 포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 예치대상 금액의 10%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 예치대상 금액의 30%
계약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 예치대상 금액의 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49.5㎡(15평)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15,000	1,000	계약시 70%, 오픈 전일 30%	공사 전 계약 취소	-
간판, 사인물	협력업체	4,000	-	계약시 50%, 오픈 전일 50%	공사 전 계약 취소	-
집기, 설비	협력업체	12,000	-	물품 공급 7일전	설치 전 계약 취소	-
상품 및 원·부재료	협력업체 또는 가맹본부	3,000	-	개점 3일전	개점 전 계약 취소	-
POS 시스템	협력업체	-	-	설치 7일전	설치 전 계약 취소	-
합계	-	[34,000]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인테리어공사 등에 사용된 비용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은 인테리어업체와 귀하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해당 금액표시와 합계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해당 내용의 단순 합계금액으로서 표시되었으므로 가맹점 점포의 크기 및 귀하의 선택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가 직접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3.3㎡당 [110,000원](VAT포함)의 감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상기 내역 및 금액은 당사의 경영 사정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⑥ (별도금액)임대보증금, 권리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타 인·허가 비용, 철거, 폴딩 도어, 추가 간판, 전기증설, 가스,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화장실, 상·하수도공사, 어닝, CCTV, POS, 인허가, 테라스 등의 시공은 별도금액으로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점희망자가 최종결정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의 의사 결정은 가맹점 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을 늦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채용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제한 없음	교육 이수자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 기타 가맹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종업원(피고용인)	특별한 기준 없음	용모 단정자	만19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요함

※ 가맹점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당당한꼬마김밥]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월매출액의 1%	매월 말	반환 안됨	-
광고료		규정에 따름	통지날부터 15일 이내	광고 실행 전	광고 시행 후
판촉분담금		협의	통지날부터 15일 이내	행사 실행 전	광고 시행 후
교육훈련비 (수시교육1)		1인 110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
교육훈련비 (특별교육2)		1인 110			
교육훈련비 (재교육)		1인 110			
특별경영 지도비		협의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및 보수비용	지정업체 또는 직접 시공	범위에 따라 다름	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공사 개시 전	공사 개시 후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정업체 또는 직접 시공	공사범위에 따라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개시 전		공사 시작 후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광고비의 부담은 광고와 홍보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①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국단위의 상품광고 및 가맹점 모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를 포함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당사가 50%를 부담하고, 귀하를 포함하는 가맹점사업자가 50% 비율로

당당한꼬마김밥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점 모집광고만의 경우는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은 각 가맹점의 광고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총매출액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② 귀하께서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단독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 등의 제작은 [당당한꼬마김밥]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가맹사업 준비 중(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귀하는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당사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출 및 고객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역신장 및 저매출 대책 수립	요청 시	문의: 당사
피고용인, 용역제공자 등 인적구성 현황	실재 운영자와 무단 양수도 등 조사 실시	필요 시	문의: 당사
홍보, 마케팅 등 광고 및 영업현황	-	필요 시	문의: 당사
기타 판매전략 수립을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	-	필요 시	문의: 당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와 귀하와의 계약은 기본 [2년] 단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자동 갱신의 계약기간은 [1]으로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당당한꼬마김밥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당당한꼬마김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적 자격요건이 요구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전 반드시 본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본사는 양수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양수인은 당사로부터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대가로 [금5,500,000원(금오백오십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아래의 각 항의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귀하께서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간판 등 제반 [당당한꼬마김밥]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철거 또는 제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귀하께서는 기타 당사의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당사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④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께서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과 기타 귀하께서 당사에게 납부할 비용 일체를 완제 하여야 합니다.

⑤ 귀하께서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가맹점 운영 규칙,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당사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⑥ 귀하께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⑦ 귀하께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니다.

⑧ 귀하께서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당당한꼬마김밥]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 되어 귀하는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300,000원(금삼십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당한꼬마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4] 메뉴표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당한꼬마김밥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법령·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를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업체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 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물품 등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①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4] 메뉴표 참조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당당한꼬마김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	당당한꼬마김밥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원칙: 가맹점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3,000M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예외: ①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②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③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당한꼬마김밥]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당당한꼬마김밥]을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본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

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제28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1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1조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1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6조

니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한 당당한꼬마김밥의 사용범위 외에 “갭”의 서면 동의 없이 당당한꼬마김밥을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당한꼬마김밥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제15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5.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점 이후 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6. 제17조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7.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8.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10.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제22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3. 제26조 복장 규정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4.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5. 제27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갭”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16.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계 자료 통지 또는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7. 제29조 규정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8. 제30조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9.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활동을 사전 승인 없이 하거나 팸플릿, 리플렛, 카드로그, 쿠폰 등을 제작하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을”이 “갭”의 사전 승인 없이 제35조 제1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1.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제25조)
2.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8조~13조)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③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준용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④ 당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한 경우	제31조 및 가맹사업·령 준용
○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가맹본부가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당한꼬마김밥]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
○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상관례, 조리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교육비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1개월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① 귀하는 제3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 받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상의 귀하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호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제2호 직계 존·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3호 동업자간의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단 최초가맹계약서에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경우에만 한한다. 제4호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제5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제6호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상기 제②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상기 제③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사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사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③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를 당사에게 완납하고 교육 및 인·허가 사항 등의 가맹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당사는 양도·양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동조 제①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양수인 또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최초 가맹비를 면제합니다.
- ⑥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⑦ 귀하께서 대표자의 명의변경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전승인의 요청시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⑧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수·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자의 손실 및 법정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 상속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속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시 그 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상속 개시일 또는 후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의 승계의 의사를 당사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①항에 의하여 승인된 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제반 권리를 보유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당사의 승인을 얻어 상속 또는 후견개시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최초 가맹금(가입비 등 소멸성 비용)은 면제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교육은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교육비 금오백오십만원(₩5,500,000)은 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부담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당사의 승낙 없이 귀하(직계가족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당당한꼬마김밥]와 동종의 영업행위를 귀하가 운영중인 가맹점이 소재한 시·군 및 그와 인접한 시·군의 범위내에서 영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당한꼬마김밥]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21:00	원칙: 월 25일 이상	문의: 당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 등 개인 사정으로 영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운영책임자 등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청결 (Cleanliness)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주방위생·매장청소현황 등)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당사 담당자	당사 문의
친절도 (Service)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고객접대·종업원교육 등)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품질 관리 (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레시피준수·자점매입여부확인 등)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체 광고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판촉 계획 공고 및 가맹점부담액 제사→ 가맹점 동의(광고 50%, 판촉 70%) → 광고·판촉비 납입 → 광고·판촉 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체 판촉 행사	통상 행사	동일성(통일성) 유지 홍보물 등 디자인, 시안 등 본사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팝플렛·전단 등의 홍보물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광고·판촉 계획 공고 및 가맹점부담액 제사→ 가맹점 동의(광고 50%, 판촉 70%) → 광고·판촉비 납입 → 광고·판촉 시행	월별판촉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함께 있어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① 귀하는[당당한꼬마김밥]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제①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제①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하에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④ 판촉활동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전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시행되는 공동판촉활동과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단독판촉활동으로 구분합니다. 공동판촉활동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협조하며 비용분담은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단독 판촉활동의 경우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⑤ 귀하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인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 등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분담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고 귀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된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며, 당사는 그 집행 내역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귀하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단독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 등의 제작은 [당당한꼬마김밥]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귀하의 비용으로 합니다. 귀하는 [당당한꼬마김밥]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기간내 제18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31조 제5항,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

단·폐업 처리하거나 “갑”이 사용을 허락한 당당한꼬마김밥을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당당한꼬마김밥]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위약벌로 1일당 금300,000원(금삼십만원)을 곱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홈페이지 문의, 방문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일 내외 (즉시)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58일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유동인구분석, 거주자 분포현황, 업종분석, 경쟁업종분석, 상권확장분석,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D-48~45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일 (인·허가소요시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납입(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D-44일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43일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설비공사 및 홀·주방 집기, 설비 주방공사설비 등 완료시 지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별 합의) - 초도물품 등 물품공급시 지급	D-42~40일	
인테리어 공사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목공, 전기, 도장, 설비, 도배, 바닥, 후등	D-39~7일	
개점 전 교육	- 메뉴, 위생, 이론, 서비스교육	D-14~10일	
주방설비 및 집기 입고	- 냉동고, 테이블, 레인지, 조리대, 작업대 싱크대 등 주방설비, 주방 집기 및 홀집기	D-10~5일	
오픈 리허설	- 최종점검	D-5~1일	
그랜드 오픈	-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맹거래사·변호사 자문 시 계약기간 단축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방법	비고
1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방문, 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등의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등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에 제출	가맹본부에서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 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홍보물, 판촉물 등은 모두 유상으로 특별히 무상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 시 귀하와 개별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내용, 기 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내 용, 기간, 소요비용 등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 [당당한꼬마김밥]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당당한꼬마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주요내용	피교육자	이수여부	기한	비용	불참시 불이익
신규교육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등	가맹점사업 자, 직원	강제	최소 14일	5,500	필수 교육으로 - 개점지연 - 계약해지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강제	별도 통지 (기본 10시간 이수)	110	- 계약해지 - 상품공급 중단
	특별교육 신메뉴 가공 등		강제			- 계약해지 - 상품공급 중단
	재교육 음식 조리 매뉴얼 등		강제			- 계약해지 - 상품공급 중단

① 개점전 교육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의 교육, 가맹점 운영 규칙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하며, 귀하께서는 귀하나 귀하의 피고용인을 위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점 전 교육 과정 중에는 [당당한꼬마김밥]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당사가 정한 장소에서의 소정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수시교육은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③ 특별교육이란 신메뉴 개발 등 필요에 의하여 귀하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때 귀하께서는 당사에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당한꼬마김밥]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상기 “1”과 같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가맹계약서 제9조에 따라 가맹점 개점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4조에 따라 당사에 의해 가맹점 개점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영통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1층 110호(영통동, 보보스프라자)
2	경기	법조타운점	경기도 영통구 광고중앙로 248번길 7-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년(2년 13일, 743일)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82,69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근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①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②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표준재무상태표(22년~24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202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 문서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당당한꼬마김밥 대표 (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202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당당한꼬마김밥 대표 (인)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 당당한꼬마김밥 (영업표지: 당당한꼬마김밥)		
	성명(대표자) 조경숙		
	주소(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1층 110호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전화번호 031-203-7070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4] 메뉴표

당당한 꼬마김밥

꼬마김밥메뉴

당당한 꼬마	5줄	4,000원
	10줄	8,000원
참치 꼬마	5줄	5,500원
멍초참치 꼬마	5줄	5,500원
치즈 꼬마	5줄	5,500원
떡갈비 꼬마	5줄	5,500원
오들뼈 꼬마	5줄	5,500원

영통점 031-203-7070
*전화로 예약하시면 대기시간이 줄어요^^

분식 · 식사메뉴

라면	4,500원
떡라면	5,000원
치즈라면	5,000원
어묵우동	7,000원
짬면	8,000원
어묵탕	7,000원
새우볶음밥	6,500원
햄야채볶음밥	6,500원
사골떡만두국	8,000원
계량메뉴 (6월 1일 8%)	
검은콩국수	9,000원

사이드메뉴

꼬치 어묵 (17개)	1,000원
음료수	2,000원
★국물포장	500원
삼은계란 추가	500원

당당이 날개 300원 / 특수 꼬마 날개 1,000원
분식·식사메뉴 주문시 날개 주문 가능
(꼬마김밥 날개 주문은 3줄 이상 부터)

세트메뉴

a. 나폴로 set (1인 세트) 꼬마김밥(당김치10줄) + 라면 8,500원 → 500원 할인 8,000원	b. 둘이 함께 set (2인 세트) 꼬마김밥(당김치10줄) + 라볶이 + 어묵탕 20,000원 → 1,000원 할인 19,000원	c. 셋이 모여 set (3인 세트) 꼬마김밥(당김치10줄) + 라볶이 + 어묵탕 + 순대 26,500원 → 1,500원 할인 25,000원
---	--	---

※2인, 3인 세트메뉴 치즈 추가시 1,000원 추가
세트메뉴의 '종류'는 변경 불가합니다

반찬은 셀프입니다

매장 이용시 어묵국물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어묵국물 포장용 500원 당입니다.)

선불입니다

와이파이안내
031-203-7070
비밀번호 9876543210

떡볶이와 짬면의 만남
짬볶이
₩7,000